

---

# 합동대응단 출범 1년 운영성과

-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 -

---

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

# I. 조직 현황

## 조직 확대(1팀 → 2팀 체제)

### □ '26.1월부터 약 2배 규모로 확대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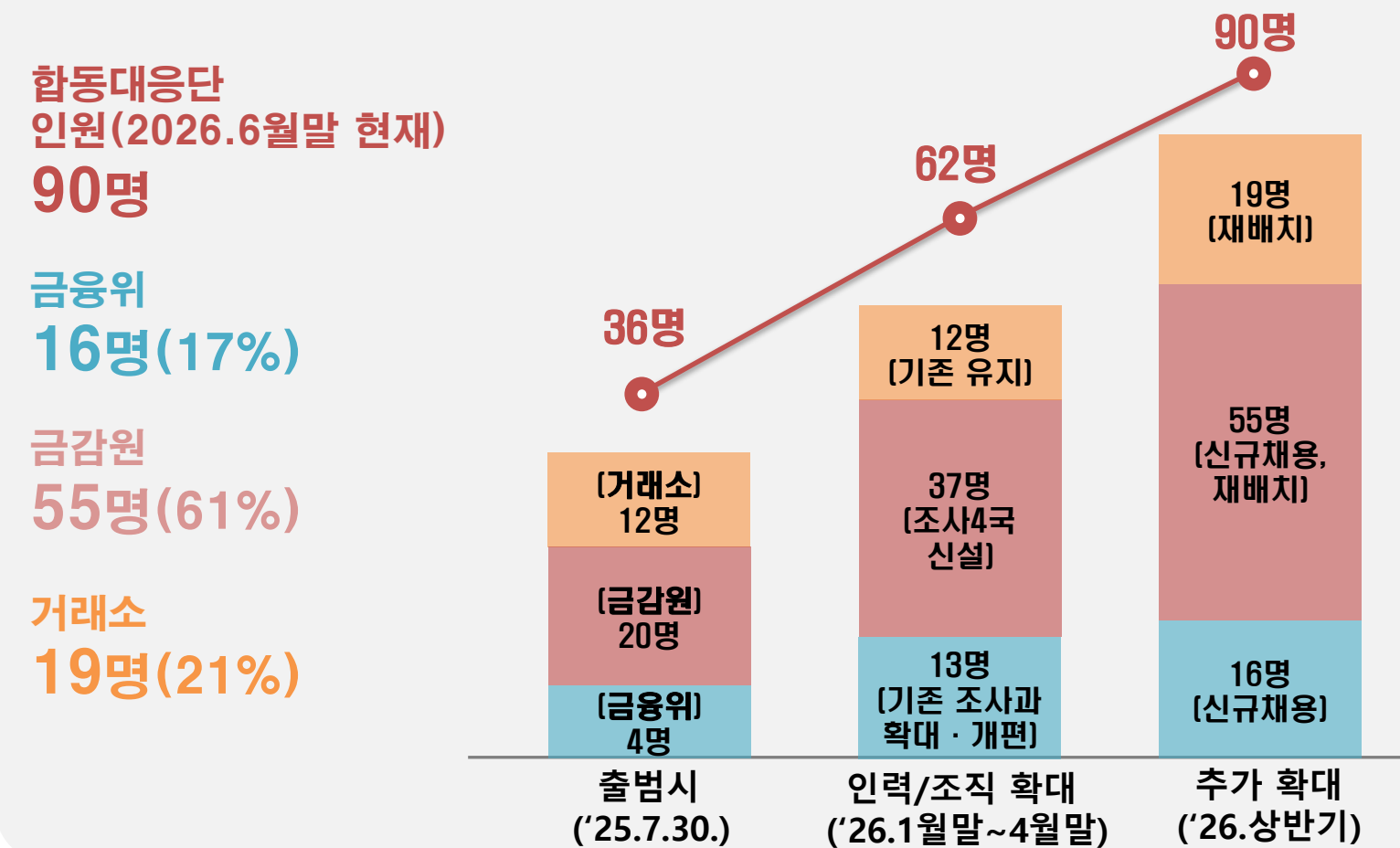
- '25.7.30. 합동대응단 출범(36명)
- '26.1월말, 기존 1팀 체제 → 2팀 체제로 확대 개편(36명 → 62명)
- '26.상반기, 합동대응단 인력 증원(36명 → 62명 → 90명)



## 인력 증원

### □ '26. 상반기 중 단계적 증원

- 각 기관별 신규채용, 재배치를 통해 합동대응단 인력 증원
- 총 100명 수준으로 증원 목표



## II. 운영 현황

### 기관간 유기적 협업체계

금융위

강제조사(압수수색, 현장조사)  
일반조사(자금추적, 매매분석)



금감원

일반조사(자금추적, 매매분석)



거래소

이상거래 탐지(시장감시, 매매심리)

### 「운영협의회」를 통한 효과적·효율적인 상시 협업

- 상시적·지속적인 정보·의견 교환 및 조율 [정기(매주 2회) 및 수시 개최]
- 시장현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**중점 심리·조사 방향** 설정  
주요 사건에 대한 심리·조사 진행상황 등 논의  
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관련 사항(필요성, 대상자, 집행 계획 등) 협의  
기관간 업무협조 및 공동대응 필요사항 등 협의

※ 합동대응단장(금감원 부원장), 금감원 부원장보, 금융위 조사과장, 금감원 조사국장, 거래소 신속심리부장 및 각 사안별 실무자까지 수시로 참석

### ① 불공정거래 조사의 적시성 확보

- 의심거래에 대한 신속심리(거래소) → 즉시 조사 착수(금융위·금감원) 체계 확립
- 필요시 강제조사로 신속히 전환하여 중요증거 인멸 전 조기 확보

### ② 불공정거래 조사의 실효성·완결성 제고

- 공동조사(압수수색, 현장조사 등)를 통해 주가조작의 핵심증거를 확보
- 행정조사 단계에서 증거물을 분석(포렌식)하여 조사결과의 완결성 제고

## II. 운영 현황

### 「신속 심리 → 즉시 조사착수」 체계 확립

#### □ 시장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감시·심리 체계 구축

- 거래소의 감시·심리 업무체계 개편(신속심리부 신설 등)
- 신속심리반 인력 확대(12명 → 19명)

#### □ 중요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착수 및 공동 대응

- 물리적 공간 통합 및 기관간 업무 칸막이 제거
- 조사현황 등 상시적 정보교환 및 중대현안 공동 대응

→ 심리기간(6개월 → 3개월) 단축, 중요사건 즉시 조사 착수 등  
초동대응 체계를 효율화하여 불공정거래에 적시 대응

### 각 기관의 장점을 융합한 공동조사

#### □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사건에 대해 금융위·금감원 공동조사

- 압수수색(포렌식), 현장조사 등 강제조사 수단 활용
- 행정조사 단계에서 조기에 증거자료 확보
- 실제 확보된 증거에 기반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혐의 사실을 더욱 효과적으로 규명

→ 금융위의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 전문성을  
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조사의 실효성 및 완결성 제고

#### [기대효과] 전체 처리기간(혐의 포착 ~ 조사 ~ 기소) 단축

- 최초 혐의 포착시부터 조사착수시까지 기간 단축(즉시 착수)
- 행정조사 단계에서 핵심증거를 조기에 확보·분석(포렌식)
- ☞ 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수색(포렌식) 조기실시 등 조사절차 효율화로  
혐의 포착부터 검찰 수사완료까지 소요되는 전체 처리기간 단축 효과

### III. 주요 성과

#### (1) 불공정거래 엄정 조사

##### 조사완료 사건①

###### □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등

- 대형학원장·병원장·금융전문가 등이 수십 개의 차명 계좌와 거액의 자금을 동원한 장기 시세조종·부정거래
- 압수수색/계좌동결 조치 후, 검찰 고발(15명)

###### □ 증권사 고위 임원 내부자거래

- 증권사 고위 임원이 직무상 지득한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지인에게도 전달
- 압수수색 후, 검찰 고발(8명) 및 과징금 부과(8명)

##### 조사완료 사건②

###### □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1호 사건

- 상장사 내부 직원이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
- 3대 불공정거래(미공개·시세조종·부정거래)에 대한 과징금 최초 부과 사례

※ '24.1.19.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

###### □ 방송사 직원 미공개정보 이용

- 방송사 공시담당자 등이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
- 압수수색·현장조사 후, 검찰 고발·통보(2명)

※ 고발조치(증선위) 후 검찰 협의를 거쳐 불공정거래 과징금도 추가 부과

### Ⅲ. 주요 성과

#### (1) 불공정거래 엄정 조사

##### 조사완료 사건③

###### □ 공시대리인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

- 코스닥 공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대표 등이 연루된 미공개정보 이용
- 검찰 고발(2명) 및 통보(1명)

###### □ 분식회계를 동원한 분할 재상장 부정거래

- 상장사 경영진 등이 분식회계로 부실을 숨긴 채 자회사를 고가에 매각하여 재무상태가 개선되는 듯한 외관을 형성
- 이를 통해 동사 주식의 분할 재상장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부당이득 취득
- 검찰 고발(4명)

##### 조사 진행중 사건

###### □ 기자 선행 매매

- 전·현직 기자들이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 보도 전 해당주식을 매수,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
- 조사 진행 중(압수수색 실시)

###### ◎ 합동대응단은 그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 사실이 알려진 위 사건들 외에도 다수 사건을 조사

- \* 현재까지 총 10여건에 대해 검찰고발,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으며, 알려진 사건 외에도 다수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, 현장조사 등 실시



### Ⅲ. 주요 성과

#### (3) 시장의 자정노력 확산 계기

##### 관련 기업들의 내부통제 등 강화

- (증권사)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 전면 개편
  - 대표이사 주도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사 차원의 내부통제 점검 및 개선작업 진행
  - 모든 임원 신규 주식매수 금지·모니터링 범위 확대(가족명의 계좌), 미공개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등
- (언론사) 취재·보도·제작 윤리지침 마련 통한 내부통제 강화
  - 대표이사 직속 윤리경영 전담 조직 신설 및 내부통제 준수 여부 상시 점검 등 취재정보 사적이용 차단 노력
  - 단기(6개월 이내) 보유 주식 취득 및 파생상품 거래 금지, 투자내역 신고 제도 신설 등

##### 업계차원으로 자정노력 확산

-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업계로 확산
  - (금융사) 조사 대상이 아닌 증권사들도 임직원 주식 매매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검토·추진
  - (언론) 전국언론노동조합이 '언론인 금융투자 가이드 라인' 발표
    - 취재정보의 투자 이용 제한, 이해충돌 예방 등 규정
- 합동대응단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자성을 통한 자정노력을 이끌어 냄

---

## IV. 맺음말

**“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”**